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합56331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C

변론 종결2014. 12. 5.

판결 선고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2013. 9. 27. 접수 제304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인컴엑스(이하 '인컴엑스'라 한다)는 2013. 7. 19. 신용보증기금(변론을 분리한 이 사건의 다른 원고이다)과 보증금액 5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7. 19.부터 2014. 7. 18.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변론을 분리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이다)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인컴엑스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인컴엑스는 2013. 7. 31. 국민은행에 전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7억 원을 변제기 2014. 7.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인컴엑스가 2013. 10. 15.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8.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으로 598,493,032원(원금 595,000,000원 + 이자 3,493,0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A는 2013. 9. 4.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9. 27.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2013. 9. 27. 접수 제304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는 2013. 11. 15. 파산을 신청하여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 11440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파산 신청 당시 454,123,36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2013. 7. 19. 인컴엑스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2013. 11. 8.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인컴엑스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A는 2013. 9.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변제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보이므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 상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므로,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단서).

피고는 A를 교회에서 알게 되었고 A가 당시 병원비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매수한 것일 뿐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가 2013. 3. 1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장결핵에 대한 약물치료 및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A가 2013. 2. 22.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약 1,200만 원 상당의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매매로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위 부동산 매도행위가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로 부인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인규

판사김세용

판사정혜승

별지